

김성식 귀하



102075074501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50번길 40, 6동 206호 (송정동
부민테크)

46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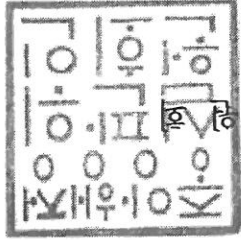
김성식

응양해정서관위원회
응답서

① 사건	202205792 자동차공전면의 취소처분 취소청구		
② 청구인	김성석	③ 피청구인	경자남도경찰청장
④ 응답서 붙	답면서 부분		
⑤ 근거 법조문	「해정서관법」 제26조제2항, 관공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위와 같이 응답합니다.

2022. 0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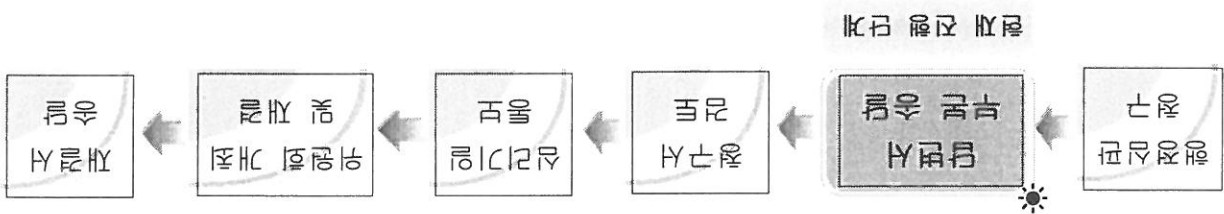
응양해정서관위원회

김성석 귀하

안내 글

1. 이 탐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의견내용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재결서'로 발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아래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참고로, 탐면서 부본은 귀하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한 경우에는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작성하여 기재 없이 우리 위원회로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http://www.simpan.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심리기원 불기 응의 사유로 보충서면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재 없이 심리기원 연기(면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및 각종 서류 제출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www.simpan.go.kr>)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center.simpan.go.kr>)에서 '나의 사건조회', '행정심판관련신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응급하신 사항은 ☎ 110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판권사대리인 신청안내

1. 행정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 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중앙행정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적보 운동이동이 가능한 소명서류의 경우, 신청사실, 행정적보 운동 동의를사'란에 해당사항 체크 후 동의하시면, 단단 운동원이 행정적보 운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도록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 7. 1. 이후 중앙행정사판위원회 신청분부터 적용)

	신청 대상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울림부차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이유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경제적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청 발금)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으로 대리인 임용을 소명하는 증명서류

※ 공리인 행정사판권사대리인 신청서(<http://www.simpan.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식모음본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신청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단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사판 청구인의 신청이 부합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임용이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임용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첨 보 편 서(공전)

접수번호 2022-12951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첨 구 인 김성석
516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창북로 12, 201동 1003호 (청안동, 부영2차아파트)
피청구인 경상남도경찰청장
첨 구 인 2022-04-14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첨 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첨구인의 첨 구 내용을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첨 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 개요

첨 분 유형 : 면허취소

첨 분 대상 : 1종보통, 2종보통

첨 분 연 : 2022. 4. 12.

첨 분 사유 : 음주운전(음주운전 2회)

- 포탈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0.095%

- 채혈측정유무 : ×

위반행위일 : 2022. 2. 23.

위반장소 : 경단 창원시 진해구 누동 1918 의곡코차도 앞 도로

공전차명 : 쏘나타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기준의 공전면허 취득 및 취소 내역

가. 공전면허 취득 내역

- 2010. 06. 22. 제1종보통

- 1996. 05. 08. 제2종보통

나. 취소처분 내역

- 2022. 02. 23. 공주공전(혈중알코올농도 0.095%)

- 2022. 03. 03. 공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의견진술인

- 2022. 03. 24. 공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송(1차)

- 2022. 03. 31. 공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송(2차)

- 2022. 04. 12. 공전면허 취소일자

4.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

- 2001. 12. 26. 공주공전(혈중알코올농도 0.153%)

- 2006. 06. 30. 신호 또는 지시위반

- 2014. 02. 16. 안전공전의무위반

- 2014. 10. 09. 신호 또는 지시위반

인원이 추락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허취소 기판지를 조파한 상태에서 약 15km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청구 기판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면허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단순 쪼가르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다를 소해 탄라고 주장하나,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업무의 특성상(영업활동, 납품 업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를 다. 청구인은, 부민테크, 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한다.

한다. 대에 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것은 적법·타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 한 것이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바 있음에도 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은 한 때에는 청구인이 소지한 모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반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93조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여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 것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량으로 반복되어 교통상황이 난로 혼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교통 및 취소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입니다. 자동차가 음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가.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동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 1. 롱 제1호증 : 공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 1. 롱 제2호증 : 자동차공전면허대장
- 1. 롱 제3호증 : 공전경력증명서
- 1. 롱 제4호증 : 공전면허취소처분진술서
- 1. 롱 제5호증 : 응주공전단속사건결과과조회
- 1. 롱 제6호증 : 주취공전자정확진술보고서
- 1. 롱 제7호증 : 위반사고접수제조회
- 1. 롱 제8호증 : 공전해적처분조회
- 1. 롱 제9호증 : 공전경력조회

별첨

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사고 위험의 수위가 낮로 돌아가지는 현실에 피물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행한 이
 사회적 별폐와 비교한다면 결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응주공전으로 인한
 차를 공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로 인한 공전면허취소처분은 응주공전에 기인한
 청구인은 응주공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7. 결 끝

1918 의국포차로 한 도로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임.

청구인의 소유 13마6926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공전하다 걸단 청원시 진해구 주동
 청구인은 2022. 02.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출에 취한 상태에서

6. 적발경위

행하여진 적발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은양해경신판위원회 귀을

피청구인 : 경상남도경화청장
신판수행자 : 신수미
연락처 : 055-233-2606

2022. 4. 14.

1. 등 제10호증 : 문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등 제11호증 : 문전면허취소처분사건물지서